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율 (2025년 기준)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일반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의료급여 수급자	0%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40% 감경대상자	9%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산정기준

방문당 시간	수가(원)	본인부담금 /15% (원)	본인부담금 /9% (원)	본인부담금 /6% (원)
30분	16,940	2,541	1,525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5
90분	33,120	4,968	2,981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30
150분	49,160	7,374	4,424	2,950
180분	55,350	8,303	4,982	3,321
210분	61,670	9,251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3	4,082

* 본인부담금 소수점 이하 반올림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①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 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고,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 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해 책정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 ② 대상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④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 하여야 한다.